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철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민병주, 박 석, 박중화,
송경택, 신동원, 유만희,
유정인, 이성배, 이종환,
채수지, 최민규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함.
- 이에 따라, 서울특별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의4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이용자 안전조치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

1.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

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4(이용자 안전조치) ① 법</u> <u>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</u> <u>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</u> <u>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</u> <u>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</u> <u>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</u> <p><u>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</u> <u>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</u> <u>생명·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</u> <u>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4(이용자 안전조치)에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사안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의 여지¹⁾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(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) 유선상 문의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평생교육기관에서 보험을 기가입하고 있으며, 가입 비용 또한 기관에서 부담하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재정소요영향 검토 필요성] 보험가입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, 보험가입 시 서울시 부담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